

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

《 입찰 유의사항 》

- ◎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은 청주시청(회계과)에서 대행하고, 계약업무 전반(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)은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◎ 본 공사는 **조경식재.시설물공사업(주력분야: 조경식재공사)**인 전문공사이며 유지보수공사입니다.
- ◎ 본 공사는 **4.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('24. 1. 1. 개정)에 따른 종합·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**

2026. 7. 9.
청주시 분임재무관

1.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사업명 : 2026년 하반기 청원구 띠늑지 관리사업
- 나. 위치 : 2순환로 등 16개노선 20개소
- 다. 사업개요 : 기계제초 4,208㎡, 인력제초 17,422㎡, 관목전정(H0.9 미만) 7,427㎡, 관목전정(H0.9 이상) 6,502㎡ 등
- 라. 추정금액 : **금77,000,000원(금칠천칠백만원)**
【추정가격: 70,000,000원, 부가가치세: 7,000,000원】
- 마. 기초금액 : **금77,000,000원(금칠천칠백만원)**
- 바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026. 9. 23.까지

2. 전자견적 개시일시 : 2026. 7. 10.(금) 10:00

3. 전자견적 마감일시 : 2026. 7. 15.(수) 12:00

- ※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[입찰진행정보]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-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.

4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. 7. 15.(수) 13: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

- ※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,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**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업(주력분야: 조경식재공사)**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)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]부터 입찰일까지 그 **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**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 체결일)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.
- 나.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,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「지방계약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**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**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6.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

- 가.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**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**
- 1) 입찰공고문과 설계서, 설계설명서
 - 2)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(조달청 고시, 입찰공고일 현재용)
 - 3)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, 입찰공고일 현재용)
 - 4)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
 - 5)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, 입찰공고일 현재용)
 - 6)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, 입찰공고일 현재용)
 - 7)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회계 예규 등 포함)
 - 8) **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.**
- 다.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
※ 열람장소(사업부서) : 청주시 공원관리과 이재인 주무관(☎043-201-4407)

※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7. 「대금지급 확인시스템(하도금지킴이)」 대상사업 안내

- 가.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「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(하도금지킴이)」 가입 대상 사업으로, **계약상대자(하도급 업체 포함)는 반드시 하도금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, 건설 근로자, 장비·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**
- 나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“「하도금지킴이」 이용 확약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“「하도금지킴이」 이용 확약서”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 **아울러,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**

- 다. 계약대상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「표준하도급계약서」 기반)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라. **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*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**하여야 하며,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
(※ 금융기관 : 국민, 기업, 농협, 새마을, 신한, 우리, 우체국, KEB하나, 씨티, 수협)
- 마.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(1588-0800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8.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

- 가.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, 입찰공고일 현재용)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**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**가 적용되며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**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**합니다.
- 나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(先지급, 현금지급,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, 단, 지급확인제는 적용됨)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(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)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(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)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약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(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)하여야 합니다.

9.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

- 가. 본 공사는 **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, 산업안전보건관리비**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 반영 대상입니다.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(산출내역서 포함) **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**하여야 하며,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국민연금 보험료	국민건강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퇴직공제 부금비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
1,845,669	1,396,880	183,550	-	804,323	860,340	-

- 나.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,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**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, 사용내역서,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(사후정산)**하여야 합니다.

다.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

-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(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),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(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)
- 안전관리비 :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(안전관리비)
- 품질관리비 :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「별표 6」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

10. 건설기계 대여대금(임대료)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

- 가. 계약상대자(수급인, 하수급인,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)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64조의3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작성하고, **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(또는 직불합의서)을 발주기관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(※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.)
- 다.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**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(명단, 연락처, 금액 등 기재)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11. 하도급 관련사항

- 가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,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,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,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**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”를 제출하여야 하며**,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**“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”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라. 본 공사는 **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**합니다. 또한,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**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,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,
- 바.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(도급인)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.

12.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: 총액견적, 전자견적, 지역제한, 제한최저낙찰

13. 견적서 제출

- 가.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“보낸 문서함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14.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

- 가.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나. 직접공사비

- 단위 작업량 :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(전기, 정보통신,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)
- 노무비 :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
- 표준시장단가 :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

다. 간접공사비 :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비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비율

- 법정경비 :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부가가치세
-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: 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

15.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

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,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, 낙찰자 결정은 **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.745 이상**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-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: 5,090,762원

국민연금 보험료	국민건강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퇴직공제 부금비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
1,845,669	1,396,880	183,550	-	804,323	860,340	-

나.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,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다. 본 공사는 **적격심사를 생략**하며, 낙찰자(개찰 1순위자)는 **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**하시기 바랍니다.

16. 견적서 제출의 무효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, 입찰 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.

나. 업체의 상호(법인명칭) 및 대표자(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)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,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**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** 처리됩니다.

다. **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** 됩니다.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,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17.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(청렴서약제)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
나.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
18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**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**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나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19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본 공사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(수익계약 체결제한)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**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.**
- 1)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(수익계약 체결 제한)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'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[붙임]'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2)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[붙임]의 **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**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 - 3) 수익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,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.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,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(☎ 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에 게재됩니다.
- 라.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,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.5%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마. 이 입찰은 **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**이 적용되는 공사이며,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기타 문의사항

-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: **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(☎043-201-1723)**
-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: **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 (☎ 043-201-4404)**
- 공사감독 관련사항 : **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1팀 (☎ 043-201-4407)**

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·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(<https://www.mois.go.kr>)
고객민원 / 신고센터 /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cheongju.go.kr>) 청주3.0 정보공개
/ 감사정보 /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발주자	발주기관 청주시	발주부서	발주날짜
	발주내용 :		[√] 공사 [] 용역 [] 물품 [] 기타
	수의계약 사유 :		
계약상대자 (확인인)	성명	소속	[] 개인 [] 법인 [] 단체 [] 기타
	연락처	주소	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①	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	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③	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④	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⑤	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⑥	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 년 월 일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